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3-5호

「고흥군의회 청원심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3년 2월 3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## 고흥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
  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1조를 제59조로 변경(안 제1조)

### 3. 개정조례안: 별도 붙임

### 4. 입법예고기간 : 2023. 2. 3. ~ 2023. 2. 8.(6일간)

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  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 
2. 신·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1부.  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##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[붙임 3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 \_\_\_\_\_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 \_\_\_\_\_

○ 전 화 번 호 : \_\_\_\_\_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